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1500130

신 청 인 1: 롯데제과 주식회사

2: 롯데렌탈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윤희(법무법인 세종)

피신청인: 우지성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1: 롯데제과 주식회사(대표자 : 김용수, 신동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10(양평동 5가)

2: 롯데렌탈 주식회사(대표자 : 표현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8층(호계동, 신원

비전타워)

대리인: 변호사 김윤희(법무법인 세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8F

피신청인: 우지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31

분쟁 도메인이름은 “lotterentacar.com, lotterent.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후이즈(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11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5. 8. 3.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5. 8. 13.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등록기관은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5. 8. 13.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5. 8. 19.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5. 9. 8.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5. 9. 22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후보를 고려하여 조태연 위원을 주행정패널로 남호현, 서정일 위원을 부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같은 날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5. 10. 2.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들은 한국의 롯데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사들로서, 신청인 1은 1967. 7. 24. 한국에서 “LOTTE” 표장에 관하여 꺾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등록번호 제13434호)을 받았고, 그 이후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이 영위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업과 관련해 “롯데” 및 “LOTTE” 가 상하로 결합된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고 한다)에 대해 한국에서 33개의 상표등록들 및 서비스표등록들을 취득, 보유해 왔으며, 신청인들은 이 사건 표장을 전체로서 또는 분리하여 상품 및 서비스업에 사용해 왔다.

피신청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기록상으로는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분쟁 도메인이름은 “lotterentacar.com” (이하 ‘분쟁 도메인이름 1’이라고 한다) 및 “lotterent.com” (이하 ‘분쟁 도메인이름 2’라고 한다)로서 모두 2015. 2. 17. 등록되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들은 그 요부가 “lotte”로서 이 사건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들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분쟁 도메인이름들은 한국에서 주지·저명한 이 사건 표장의 명성을 이용할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들은 지인들과 유아용 자동차/유모차 렌트사업을 준비 중에 Lotter(복권을 뽑는 자), Entertainment 및 Car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합성어를 만들어서 등록한 것으로서, 그 등록 당시인 2015. 2. 17.경 신청인 2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들을 20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신청인 2의 전신)의 제안을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등록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모두 충족됨을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들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인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들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들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하에서 상기 요건들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 A. 상표·서비스표와 분쟁 도메인이름들의 유사

상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롯데그룹의 계열사들로서 이 사건 표장에 대하여 그 계열사들이 영위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업과 관련해 많은 상표등록들 및 서비스표등록들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해 왔고, 따라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표장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쟁 도메인이름들에 있어서 'rentacar'(분쟁 도메인이름 1의 경우)와 'rent' (분쟁 도메인이름 2의 경우)라는

부분은 통상 차량임대업종과 임대업종을 나타내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을 가지는 요부는 모두 “lotte” 이고, 그것은 이 사건 표장과 외관·호칭·관념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들은 신청인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상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지인들과 유아용 자동차/유모차 렌트사업을 준비 중에 Lotter, Entertainment 및 Car를 합성하여 분쟁 도메인이름들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만으로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들에 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신청인에게 그러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 1은 1967년경 이래 한국에서 음·식료품을 포함한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상품 및 서비스업에 사용해 왔다. 그리고, 신청인들이 속해 있는 롯데그룹은 음·식료품의 제조·판매는 물론 관광, 석유화학,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영업을 위한 상표 및 서비스표로서 분쟁 도메인이름들의

등록 훨씬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해 왔다. 그 결과 이 사건 표장은 분쟁 도메인이름들의 등록 당시 이미 한국 내에서 주지·저명성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의 존재와 명성에 관하여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차량 렌탈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는 신청인 2, 즉 롯데렌탈 주식회사는 롯데그룹이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을 인수합병해 롯데그룹으로 편입시키면서 상호가 2015. 6. 24.자로 분쟁 도메인이름들과 극히 유사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한편 분쟁 도메인이름들은 그 상호 변경보다 앞선 2015. 2. 17.에 등록되었지만, 롯데그룹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이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의 인수합병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및 롯데그룹이 그 입찰에 참여했다는 점은 그 보다 수개월전인 2014. 10.경부터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었고, 따라서 피신청인도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전후로 분쟁 도메인이름들과 같이 “lotte” 와 “rent” 등을 이용한 “lotterental.co.kr”, “lotterental.com”, “lotterentcar.com”, “lotterentcar.co.kr” 등의 도메인이름들이 롯데그룹의 계열사들 이외의 제3자들에 의하여 등록되었다.

상술한 점들, 특히 분쟁 도메인이름들의 요부인 “lotte” 의 한국 내에서의 주지·저명성에 비추어 볼 때, 분쟁 도메인이름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들을 20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신청인 2의 전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은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D.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규정 제4조 (a)항상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됨을 입증했다고 판단된다.

### 6. 결정

상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규정 제4조 (a)항상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됨을 입증했다고 판단되므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기하여, 신청인들의 청구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 도메인이름들인 “lotterentacar.com” 및 “lotterent.com” 을 신청인 2(롯데렌탈 주식회사)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

주 행정패널

조태연

---

부 행정패널

남호현

---

부 행정패널

서정일

결정일: 2015년 11월 6일